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8-63호
2018. 8. 14.(화)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입법예고(4)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637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638호) 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639호) 5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640호) 68

공									
람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2. 개정이유

민선7기 행정기구 조정 계획에 따른 기구의 설치·변경·폐지에 대한 준비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장 및 실·단·과장의 직급 등을 정함(안 제2조).

나. 실·단·국 설치 내역을 정함(안 제3조).

다.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에 설치하는 과를 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 라. 본청 실·단·국장의 분장사무를 별표로 정함(안 제7조).
- 마. 직속기관 보건소 설치 관련 항목에서 보건지소 삭제 및 건강생활 지원센터 설치 추가, 소장 등과 소관 사무를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바. 평생학습원이 복합문화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센터장의 역할과 소관 사무를 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사. 하부행정기관(동)의 설치와 직무 및 동장의 역할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 2) 규제심사: 규제법무담당 협의
- 3)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 협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 5) 입법예고: 2018. 8. 14.~2018. 8. 21. / 7일간

※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입법예고 기간 7일로 단축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8.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

(전화 : 042-608-6043, FAX : 042-608-3811, E-mail : leeyongsim@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 담당자(전화 : 042-608-60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단·과장의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단·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직급과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실·단·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4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교육공동체과, 문화체육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제5조(경제복지국) 경제복지국에 에너지경제과, 기후환경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를 둔다.

제6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에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를 둔다.

제7조(분장사무) 구 본청 실·단·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4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11조(복합문화센터 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서 및 그 밖의 자료를 비치하여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해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 64 (신탄진동)에 둔다.

제12조(복합문화센터의 장) 센터에 복합문화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고, 센터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센터장은 센터 관리와 프로그램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장 하부행정기관(동)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과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5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장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평생학습원”을 “복합문화센터”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장, 실·과장”을 “국장,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수입기관란 중 “평생학습원장”을 “복합문화센터장”으로 하고, 일련번호란 2호와 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 소관부서란 중 “경제과”를 “에너지경제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 중 “실·국”을 각각 “실·단·국”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및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교육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교육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문화담당주사”를 “문화예술정책담당주사”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문화담당주사”를 “문화예술정책담당주사”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제과장”을 “에너지경제과장”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에너지경제과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제과장”을 “에너지경제과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8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제과장”을 “에너지경제과장”으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경제과장”을 “새로운대덕추진단장”으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 중 “경제과장”을 “에너지경제과장”으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기획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교육공동체과장”으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청소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㉛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㉜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㉝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③4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청소위생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③5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청소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③6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도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③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건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시설담당주사”를 “청사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③8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평생학습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중 “평생학습원”을 “복합문화센터”로 하고, “평생학습도서관”을 각각 “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평생학습원장”을 “복합문화센터장”으로, “원장”을 “센

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중 “원장”을 각각 “센터장”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원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원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원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원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기관장명의 중 “평생학습원장”을 각각 “복합문화센터장”으로, “평생학습도서관”을 각각 “도서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라목 중 “실·과장급”을 “실·단·과장급”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평생학습원”을 “복합문화센터”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평생학습원장”을 “교육공동체과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 본청 실·단·국장의 분장사무 (제7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2]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8조 관련)

명 칭	주 소	관 할 구 역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 (석봉동)	대덕구 일원
대덕구건강생활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87 (범동)	대덕구 일원
장동보건진료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디로15번길 63 (장동)	장동 일원

※ 장동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은 법정동임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생략)

제116조(합의제 행정기관) (생략)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생략)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

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③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8. 6. 19.>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비 고

1. 시·군·구별 기구설치기준은 위 표의 실·국의 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전년대비 변화율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 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 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5.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급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①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병(傷病)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개조(分娩介助)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감사실	
담당자 연락처	이 용 심 042-608-6043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2.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 본청 국장 및 실·단·과장,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장의 직급과 각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를 정해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획홍보실장, 감사평가실장,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의 직급을 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나. 자치행정국장 및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의 직급을 정함(안 제6조).

- 다. 경제복지국장 및 경제복지국 소속 과장의 직급을 정함(안 제7조).
- 라. 안전도시국장 및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의 직급을 정함(안 제8조).
- 마. 본청 실·단·과장의 분장사무를 별표로 정함(안 제9조).
- 바. 보건소장 직급을 정함(안 제10조).
- 사. 하부조직을 정하고 보건행정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를 정함(안 11조).
- 아. 사업소장 직급, 하부조직의 설치 및 관장의 직급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자. 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정함(안 제14조).
- 차. 동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를 정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 2) 규제심사: 규제법무담당 협의
 - 3)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 협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 5) 입법예고: 2018. 8. 14.~2018. 8. 21. / 7일간

※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입법예고 기간 7일로 단축

5. 의견제출

-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8.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

(전화 : 042-608-6043, FAX : 042-608-3811, E-mail : leeyongsim@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 담당자(전화 : 042-608-60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의 국장과 실·단·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 직급과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국·실·단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구 본청

제1절 기획홍보실·감사평가실·새로운대덕추진단

제3조(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감사평가실) ① 감사평가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평가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조(새로운대덕추진단)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절 자치행정국

제6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교육공동체과장·문화체육과장·회계정보과장·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절 경제복지국

제7조(경제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에너지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절 안전도시국

제8조(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

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분장사무) 실·단·과장은 별표 1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제10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장을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행정과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장 사 업 소

제12조(복합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복합문화센터에 신탄진도서관, 안산도서관 및 송촌도서관을 두고, 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14조(분장사무) 센터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5장 동

제15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분장사무) 동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다목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4호제1항 중 “평생학습원”을 “복합문화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은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장”은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하단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 확인자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를 각각 “실·과·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 중 “실·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제11조 중 “실·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제12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대덕구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과장급”을 “실·단·과장급”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평가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평가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감사평가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평가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평가실”로, “자치행정과”를 “회계정보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평가실

3. 회계정보과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평가실”로, “자치행정과”를 “회계정보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평가실”로, “자치행정과”를 “회계정보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평가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회계정보과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평가실”로, “자치행정과”를 “회계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평가실

제16조제1호다목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평가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회계정보과

제1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별표의 관수자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국·과”를 “실·단·국·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실·과”를 “실·단·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실장·국장·과장”을 “실장·단장·국장·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2호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치행정과”를 “회계정보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당 직 근 무 일 지

20 년 월 일 (요일, 일·숙직)				담당자	담당	과 장	결
				전결			재
당 직 자	·사령 : 직 성명 ①인	기 관 별 당 직 사 항					
	·반장 : 직 성명 ①인						
특 이 사 항				오 정 동			
				대 화 동			
				회 덕 동			
				비 래 동			
				송 촌 동			
당직자 보안점검 실시결과				중 리 동			
부 서 별	이상유무	부 서 별	이상유무	법 1 동			
기획홍보실	유·무	여성가족과		법 2 동			
감사평가실	유·무	위 생 과		신 탄 진 동			
새로운대덕추진단	유·무	도시재생과	유·무	석 봉 동			
총 무 과	유·무	안전총괄과	유·무	덕 암 동			
교육공동체과	유·무	공원녹지과	유·무	목 상 동			
문화체육과	유·무	건 축 과	유·무	보 건 소			
회계정보과	유·무	건 설 과	유·무	복합문화센터			
세 무 과	유·무	교 통 과	유·무	신탄진도서관			
민원지적과	유·무	의 회 사 무 과	유·무	안 산 도 서 관			
에너지경제과	유·무	기 타 (대덕구체육회, 대덕구체육회 사 무 국, 자원봉사센터, 후 별 관 등)	유·무	송 촌 도 서 관			
기후환경과	유·무			대덕문화체육관			
복지정책과	유·무			대 청 공 원			
사회복지과	유·무						
※ 당직자 보안점검 : 화재예방, 시건장치 잠금상태, 문서 보안상태 등							
C C T V 관 찰 사 항							
관 찰 시 간	이상유무	조 치 결 과				점 검 자	
: ~ :							
: ~ :							
: ~ :							
: ~ :							

열쇠관리대장

구 분	년 월 일 보 관 자		년 월 일 지 출 자	
	시 간	성 명	시 간	성 명
구 청 장 실				
부 구 청 장 실				
자 치 행 정 국 장 실				
경 제 복 지 국 장 실				
안 전 도 시 국 장 실				
기 획 홍 보 실				
감 사 평 가 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총 무 과				
교 육 공 동 체 과				
문 화 체 육 과				
회 계 정 보 과				
세 무 과				
민 원 지 적 과				
에 너 지 경 제 과				
기 후 환 경 과				
복 지 정 책 과				
사 회 복 지 과				
여 성 가 족 과				
위 생 과				
도 시 재 생 과				
안 전 총 괄 과				
공 원 녹 지 과				
건 축 과				
건 설 과				
교 통 과				
의 회 사 무 과				
자 원 봉 사 센 터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재무담당주사”를 “경리담당주사”로,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5항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하단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실·단·과는 관서의 실·단·과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다목·마목·사목 및 자목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 및 하목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라목 중 “평생학습도서관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국장”을 각각 “실·단·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를 “실·단·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국장”을 각각 “실·단·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실·과”를 “실·단·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을 “기획홍보실장과 회계정보과장”으로,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

홍보실장”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93조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2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23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관서란 중 “평생학습원”을 “복합문화센터”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1-1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89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90호서식 중 “실·과”를 각각 “실·단·과”로 한다.

별지 제91호서식 중 “실·과”를 각각 “실·단·과”로 한다.

별지 제94호서식 중 “국 과”를 “실·단·국 과”로, “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98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02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04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㉒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경제과”를 “에너지경제과”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부서명란 중 “경제과”를 “에너지경제과”로, “환경과”는 “기후환경과”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 보내는 사람란 중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뒷면 문의 및 불편신고란 중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보내는 사람란 중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뒷면 문의 및 불편신고란 중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청소위생과”를 각각 “기후환경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환경과장”을 “기획홍보실장, 회계정보과장,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 분청 실·단·과장의 분장사무 (제9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2]

보건행정과장의 분장사무 (제11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3]

복합문화센터장 및 도서관장의 분장사무 (제14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4]

동장의 직급 (제15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5]

동장의 분장사무 (제16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감사실	
담 당 자 연 락 처	이 용 심 042-608-6043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민선7기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2018년도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총 정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77명”에서 “689명”으로 12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62명”에서 “674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2 및 안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예산 필요

다. 비용추계서: 별첨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법무담당 협의

3)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 협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18. 8. 14.~2018. 8. 21. / 7일간

※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입법예고 기간 7일로 단축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8.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감
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

(전화 : 042-608-6043, FAX : 042-608-3811, E-mail : leeyongsim@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 담당자(전화 : 042-608-60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77명”을 “68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62명”을 “674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대덕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3% 이내	32% 이내	30% 이내	7% 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50%	50%		

[별표 3]

대덕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본청						
총 계				689					
정무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686					
	3급	1	1						
	4급	4	3			1			
	5급	40	21	3	3	1	12		
	6급 이하	641							
별정직	소계			2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대 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 방공무원의 정원(이하“정원”이라 한 다)의 총수는 <u>677명</u>으로 하고, 다 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62명</u></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 <u>689명</u> ----- -----</p> <p>1. -----<u>674명</u></p> <p>2. (현행과 같음)</p>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건비 증가, 안 제2조
- 일반직 증원 : 11명 - 별정직 증원 : 1명

3. 비용추계 전제 : 2019년 공무원 봉급인상률 3%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총비용(a-b)		448,659	462,119	475,982	490,262	504,970	2,381,992
세입	소계(a)						
	-						
세출	소계(b)	448,659	462,119	475,982	490,262	504,970	2,381,992
	인건비	448,659	462,119	475,982	490,262	504,970	2,381,992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별첨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126,000	126,000	126,000			378,000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등)		322,659	336,119	349,982	490,262	504,970	2,003,992
합 계		448,659	462,119	475,982	490,262	504,970	2,381,992

※ 사회복지 신규(6명)는 1인당 3천만원을 기준으로 70%, 채용일로부터 3년간 지원

7. 작성자 : 기획감사실 행정6급 이용심

8. 확인자 : 기획감사실 행정5급 윤금성

비용산출 내역

○ 정원 변동내역 : 12명 증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2	2	-	-	-	10
일 반 직	11	2	-	-1	-	10
별 정 직	1	-	-	1	-	-

○ 소요비용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448,659				
인건비	351,732				
· 기본급	313,354				
- 봉급	288,473				
		5급(25호봉)	53,972,400원 × 2명	=	107,945
		9급(2호봉)	18,052,800원 × 10명	=	180,528
- 상여금	24,881	정근수당	298,569,000원 × 1/12	=	24,881
· 수 당	2,640				
- 정근수당가산금	2,640	(20년이상~25년미만)	110,000원 × 2명×12월	=	2,640
· 명절휴가비	28,847		288,473,000원 × 1/12×120%	=	28,847
· 연가보상비	6,891		288,473,000원 × 86%×1/12×10/30일	=	6,891
물건비	21,000				
· 직급보조비	21,000				
		5급	250,000원 × 2명×12월	=	6,000
		9급	125,000원 × 10명×12월	=	15,000
이전경비	75,927				
· 성과상여금	31,358				
		5급	5,397,240원 × 2명	=	10,794
		9급	2,056,400원 × 10명	=	20,564
·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35,799		288,473,000원 × 12.41%	=	35,799
· 국민건강보험금	8,770		288,473,000원 × 3.04%	=	8,770

※ 예산서 기준 비용 산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감사실	
담 당 자 연 락 처	이 용 심 042-608-6043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1) 정원 조정 내용 : 정원의 총수 689명(증 12명)

2) 일반직 증·감 내역

▶ 5급 : 38명 → 40명 (증 2명)

- 본청 18명 → 21명(증 3명)

• 행정 5명 → 7명(증 2명) / 부서 신설

• 행정·시설 4명 → 5명(증 1명) / 부서 신설

- 행정 · 보건 0명 → 1명(증 1명)
- 행정 · 환경 · 보건 1명 → 0명(감 1명)
- 의회사무과 3명 → 3명(변동없음)
- 직속기관 4명 → 3명(감 1명)
- 의무 3명 → 2명(감 1명) / 보건지소 폐지
- 사업소 1명 → 1명(변동없음)
- 동 12명 → 12명(변동없음)

▶ **6급 : 150명 → 150명 / 변동없음**

- 본청 116명 → 114명(감 2명)
- 행정 58명 → 56명(감 2명)
- 사회복지 4명 → 2명(감 2명)
- 공업 1명 → 2명(증 1명)
- 행정 · 사회복지 3명 → 4명(증 1명)
- 행정 · 보건 2명 → 3명(증 1명)
- 공업 · 녹지 1명 → 0명(감 1명)
- 의회사무과 3명 → 3명(변동없음)
- 직속기관 8명 → 8명(변동없음)
- 행정 0명 → 1명(증 1명)
- 행정 · 보건 1명 → 0명(감 1명)
- 사업소 5명 → 5명(변동없음)
- 동 18명 → 20명(증 2명)
- 행정 · 사회복지 6명 → 8명(증 2명)

▶ **7급 : 215명 → 214명 (감 1명)**

- 본청 136명 → 134명(감 2명)
- 행정 51명 → 52명(증 1명)
- 사회복지 13명 → 6명(감 7명)
- 행정 · 사회복지 0명 → 6명(증 6명)

- 운전 4명 → 3명(감 1명)
- 사무운영 1명 → 0명(감 1명)
- 의회사무과 6명 → 6명(변동없음)
- 직속기관 15명 → 15명(변동없음)
- 사업소 12명 → 11명(감 1명)
- 행정 12명 → 11명(감 1명)
- 동 46명 → 48명(증 2명)
- 행정 33명 → 32명(감 1명)
- 사회복지 13명 → 15명(증 2명)
- 사무운영 0명 → 1명(증 1명)
- ▶ **8급 : 196명 → 196명 (변동없음)**
- 본청 124명 → 123명(감 1명)
- 행정 34명 → 33명(감 1명)
- 사회복지 12명 → 13명(증 1명)
- 공업 8명 → 7명(감 1명)
- 행정·사회복지 1명 → 2명(증 1명)
- 행정·보건 2명 → 1명(감 1명)
- 의회사무과 3명 → 3명(변동없음)
- 직속기관 15명 → 16명(증 1명)
- 간호 7명 → 8명(증 1명)
- 사업소 9명 → 10명(증 1명)
- 행정·사서 1명 → 2명(증 1명)
- 동 45명 → 44명(감 1명)
- 사회복지 14명 → 13명(감 1명)
- ▶ **9급 : 71명 → 81명 (증 10명)**
- 본청 40명 → 49명(증 9명)
- 행정 5명 → 8명(증 3명)

- 세무 3명 → 2명(감 1명)
 - 사회복지 10명 → 14명(증 4명)
 - 시설 2명 → 5명(증 3명)
 - 행정·시설 1명 → 2명(증 1명)
 - 사무운영 2명 → 1명(감 1명)
 - 의회사무과 0명 → 0명(변동없음)
 - 직속기관 2명 → 3명(증 1명)
 - 행정 0명 → 1명(증 1명)
 - 사업소 6명 → 4명(감 2명)
 - 방호 1명 → 0명(감 1명)
 - 사무운영 3명 → 2명(감 1명)
 - 동 23명 → 25명(증 2명)
 - 행정 13명 → 11명(감 2명)
 - 사회복지 8명 → 10명(증 2명)
 - 사무운영 2명 → 4명(증 2명)
- 3) 별정직 증·감 내역 : 7급 상당 1명 증원(비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 2) 규제심사: 규제법무담당 협의
- 3)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 협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 5) 입법예고: 2018. 8. 14.~2018. 8. 21. / 7일간

※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입법예고 기간 7일로 단축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8.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

(전화 : 042-608-6043, FAX : 042-608-3811, E-mail : leeyongsim@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 담당자(전화 : 042-608-60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 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감사실	
담 당 자	이 용 심
연 락 처	(042) 608 - 6043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